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629호

2020.12.1.(화)



목 차

◆ 고 시

제2020-511호	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(2단계)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변경고시	2
제2020-520호	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변경고시	6
제2020-521호	서울시 PC방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및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고시	8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11호

**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(2단계)에 따른
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변경고시**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(2단계)과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(유흥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헌팅포차)과 음식점 및 카페 1종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)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20년 12월 1일
서울특별시장

1. 집합금지 조치

- 기 간 : ' 20년 11월 24일(화) 00시 ~ ' 20년 12월 7일(월) 24시
- 대 상 :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(유흥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헌팅포차)
- 내 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
- 위반 시 조치사항
 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(벌금 300만 원 이하)
 -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

2. 집합제한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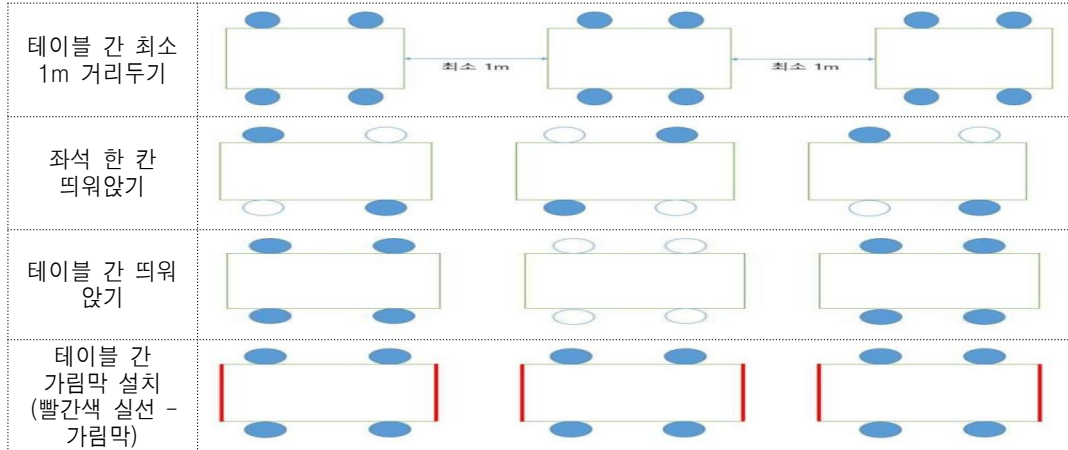
- 기 간 : ' 20년 11월 24일(화) 00시 ~ ' 20년 12월 7일(월) 24시
- 대 상 :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1종 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)
- 내 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(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)
- 위반 시 조치사항
 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(기본 2주)
 -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(벌금 300만 원 이하)
 -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

중점관리시설 핵심 방역수칙 (2단계)

① 음식점(일반·휴게·뷔페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음식점 (휴게·일반)	①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,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·배달만 허용 - 식사료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만 판매할 경우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·배달만 허용 (단, 식사료와 곁들이는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는 21시까지 매장 내 제공 허용) ②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150㎡ 이상 음식점 :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(의무) - 150㎡ 미만 음식점 :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③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④ 방역관리자 지정 ⑤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⑥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⑦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⑧ 50㎡ 이상 음식점 및 제과점 I)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II)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III) 테이블 간 띄워 앉기 IV)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⑨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⑩ 주문·계산 시 종사자와 이용자 간 거리 두기 - 주문·계산대 앞 칸막이·가림막 설치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 두기 (바닥표시) ⑪ 주문·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 ⑫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 안내문 부착	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·배달만 허용 - 식사료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·배달만 허용 (단, 식사료와 곁들이는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는 21시까지 매장 내 섭취 허용) 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③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④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, 주문·계산·대화 및 이동 시 착용 ⑤ 주문·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 ⑥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 (권고)
뷔페 추가적용	① ~ ⑫ 공통 ⑨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*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⑬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	① ~ ⑥ 공통 ⑦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⑧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

< 좌석 도식도(예) >



※ 테이블은 몇인용인지,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, 가림막은 높이 90cm 이상, 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

② 카페

구분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카페 (휴게·일반 음식점 및 제과점)	①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·배달만 허용 ②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150㎡ 이상 음식점 및 제과점 :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(의무) - 150㎡ 미만 음식점 및 제과점 :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③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④ 방역관리자 지정 ⑤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⑥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⑦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⑧ 매장 입구 등에 손 소독제 비치 ⑨ 주문·계산 시 종사자와 이용자간 거리두기 - 주문·계산대 앞 칸막이·가림막 설치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(바닥표시) ⑩ 주문·대기 시 이용자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	①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·배달만 허용 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③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④ 마스크 착용 * 주문·계산·대화 및 이동 시 착용 ⑤ 주문·대기 시 이용자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

※ '이용자' 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3. 음식점 및 카페 구분

카페	음식점
■ 프랜차이즈형 카페* *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전문점,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,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(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, 음료[커피 외]전문점, 제과제빵점,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)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■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■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·일반음식점 중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* 분식점, 패스트푸드, 편의점은 제외	■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- 다만,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■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【분식점, 패스트푸드, 편의점(음식을 조리·판매하는 경우에 한함) 등】 (식사료와 곁들이는 커피·음료·디저트류) 커피·음료·디저트류(제과제빵, 아이스크림/빙수 등)로 식사 끝에 나오는 음식

4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
 -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(제1항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
 -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

5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년 11월 24일 00시부터

6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7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8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20호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변경고시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(2020.11.24.)과 관련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2월 1일
서울특별시

1. 기 간 : ' 20년 12월 1일 (화) 00시~ ' 20년 12월 7일(월) 24시

2. 대 상

○ 서울시 소재 실내체육시설

3. 내 용 : 대상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

○ 실내체육시설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 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‘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▶ 21시 이후 운영 중단	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〈 서울시 추가 〉 ▶ 샤워실 운영 중단 (수영장 제외) ▶ 무도장 집합금지 ▶ 인원제한 (이용자간 2m거리 유지) ▶ 마스크 착용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 ▶ 2시간 1회 환기 의무(15분 이상) - 창문이 없는 경우 출입문 상시 개방	〈 서울시 추가 〉 ▶ 샤워실 이용 금지 (수영장 제외)

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4. 위반시 조치사항

-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·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
 -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(10만원)
-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집합금지(기본2주) 조치 병행가능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
-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,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 (12.30.시행)
-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

5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의제7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년 12월 1일 0시 부터

7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9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(☎ 02-2133-2733)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21호
**서울시 PC방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및
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고시**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및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2월 1일

서울특별시

1. 대상 및 기간

- 서울시 소재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/ ' 20년 12월 3일 (목) 00시~ 별도명령 시
- 서울시 소재 일반관리시설 중 대형 유통시설/ ' 20년 12월 1일 (화) 00시~ ' 20.12.7. (월) 24:00

2. 내 용

- PC방 서울시 수칙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	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
※ '이용자' 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- 대형유통시설 수칙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문화센터 관악기·노래교습 프로그램 운영금지 ▶ 시식·시음 코너 운영 금지 〈서울시 추가〉	▶ 마스크 착용

※ '이용자' 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3. 위반시 조치사항

-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
 - －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(10만원)
-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집합금지(기본2주) 조치 병행가능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
-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,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 (12.30.시행)
-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

4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의제7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
5. 처분의 효력 발생일

- 서울시 소재 PC방 : 2020년 12월 3일 0시부터
- 서울시 소재 대형 유통시설 : 2020년 12월 1일 00시부터

6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7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9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

(PC방 : 02-2133-5242, 대형유통시설 : 02-2133-5258)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